소통과 신뢰로 하나되는 창원특례시의회

제15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6.10.27.)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공보관 소관]

심 사 보 고 서

창 원 시 의 회

(기획행정위원회)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공보관 소관]

심 사 보 고 서

2026. 10. 27.(화)
기 획 행 정 위 원 회

1. 심사 경과

가. 제 출 일: 2026. 10. 16.
나. 제 출 자: 창원시장
다. 회부일자: 2026. 10. 20. (의안번호 제96호)
라. 상정 및 의결: 제156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6.10.27.)

2. 제안설명 요지 (임성운 공보관)

「지방재정법」제18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금을 창원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창원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예산 내역

(단위: 천원)

내 용	2027년	2026년	증 감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	561,160	479,630	81,530

4. 관련 법규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2항 및 제3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5. 주요 내용 【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금 】

가. 출연기관 현황

○ 명칭/위치: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 / 의창구 중동 776-7

○ 준공/개관: 2023. 10. / 2023. 12.06.

○ 인　　력: 10명(센터장 1, 팀장 1, 직원 8)

○ 설립목적: 미디어에 관한 교육・체험,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 지원 등

○ 설립근거: 방송법 제90조의 2(시청자미디어재단)

나. 2026년 예산편성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26년	2027년	증감
출 연 금	561,160	479,630	81,530

* 증감사유 : 정원 증원, 시청자미디어재단 기획혁신부-2094(2026. 8. 31.)호 운영비 분담금 편성요청

다. 주요 사업

○ (미디어교육) 미디어 교육 및 체험공간 운영, 미디어교육 강사 양성

○ (제작지원) 방송 시설 및 장비 무료 대여, 영상 방송물 제작 지원

○ (접근성 제고) 장애인・노인 등 소외계층 미디어 접근권 제공(자막, 수화 등)

라. 법적 근거

○「방송법」 제90조의 2(시청자미디어재단) 제5항 및 제7항

마. 기대효과

○ 역량별 미디어교육 확대 및 강사 육성으로 지역 미디어 거점으로 성장

○ 지역 미디어 생태계 조성으로 미디어분야 창업지원 및 일자리 창출 확대

○ 소외계층(노인・장애인 등) 미디어 접근성 제고로 사회적 가치 실현

6. 참고사항

○ 관계 법령 등 (안건책자 참조)

7. 검토 의견 (수석전문위원 박정이)

○ 본 동의안은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의 2027년도 운영비 1,402,900천원 중 지방자치단체 분담분 40%인 561,160천원을 출연하기 위해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임.

○ 출연금은 방송통신위원회·경상남도·창원특례시·시청자미디어재단 4자 간 체결한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제4조에 따른 것으로, 협약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분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임.

○ 협약에 따라 창원시 분담금은 인건비와 센터 운영유지비(경상비)로 사용되며, 센터 사업비 및 신규시설·장비 관련 비용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부담함.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

조항	주요 내용
제2조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설·장비 구축, 경상남도·창원특례시는 설립공간 제공 및 설립·운영 협조·지원, 재단은 센터 관리·운영
제3조	창원특례시가 의창구 중동 776-7에 전용공간을 신축하여 재단이 활용하도록 하며, 사용기간 및 사용료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에 따름
제4조	**운영비는 방송통신위원회 60%, 지방자치단체 40% 분담**.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사전 협의
제6조	센터 발전협의회 설치(경상남도·창원특례시 추천 위원 50% 내외), 사업·정책·예산 자문
제9조	협약 체결일부터 종료 합의가 있을 때까지 효력 지속

○ 2027년 출연금은 전년 대비 81,530천원 증가하였음. 이는 정원이 2026년 7.5명에서 2027년 10명으로 2.5명 증원되었으며, 기획예산처의 처우개선비를 반영하여 1인당 인건비 단가가 전년 6,770만원에서 7,118만원으로 인상된 데 따른 것임.

【운영비 증감 내역】

(단위: 백만 원)

구분	내 역	2027년			2026년			지자체 증감액
		지자체	국비	계	지자체	국비	계	
총 계		561.2	841.7	1,402.9	479.6	719.4	1,199	81.530
인건비		142.4	569.4	711.8	101.5	406.4	507.9	40.9
경상비	일반수용비	2.6	17.8	20.4	-	22.5	22.5	2.6
	공공요금 및 제세	-	64.9	64.9	-	80	80	
	임차료	380.6	13.4	394	378.1	11.9	390	2.5
	유류비	-	0.2	0.2	-			
	시설장비유지비	-	11.7	11.7	-	11.7	11.7	
	차량비	-	1.2	1.2	-	2	2	
	복리후생비	-	20	20	-	20	20	
	관리용역비	35.5	102.6	138.1	-	153.9	153.9	35.5
	자산취득비	-	26.03	26.03	-			
	기타운영비	-	2.4	2.4	-	1.8	1.8	
	여비	-	5	5	-	3.4	3.4	
	업무추진비	-	2.2	2.2	-	2.2	2.2	
	직무수행경비	-	4.8	4.8	-	3.6	3.6	

○ 본 동의안은 「방송법」 제90조의2제7항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근거한 것으로, 업무 협약에 따라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중 지자체 분담분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임.

○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는 시민의 미디어 활용 역량을 높이고 방송·영상 등 미디어의 적극적인 활용을 지원하는 공공미디어 기반시설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출연금 지원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미디어 환경 변화와 시민의 다양한 수요에 맞춰 새로운 사업과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센터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이 요구됨.

○ 또한 창원시는 협약서에 따라 센터 운영비의 40%를 분담하고 있으나, 경상남도는 설립 당시 지원 이후 별도의 예산 지원이 없고 매년 출연금이 증가하고 있어 경상남도의 운영비 분담에 대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아울러, 협약서 제5조에 따른 지역인재 채용 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필요가 있음.

【시청자미디어센터 현황】

연 번	센 터 명	지자체명	개관 연월일
1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부산광역시	2005.11.25
2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광주광역시	2007.06.12
3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춘천시	2014.07.07
4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	대전광역시	2014.07.16
5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인천광역시	2014.08.13
6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서울특별시	2015.06.30
7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	울산광역시	2016.12.16
8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남양주시	2019.11.21
9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	청주시	2020.12.01
10	세종시청자미디어센터	세종특별자치시	2020.12.22
11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	창원시	2023.12.06
12	대구시청자미디어센터	대구광역시	2023.12.22

8. **질의 · 답변 요지**: 기재 생략

9. **토론 요지**: 기재 생략

10. 심사 결과: **원안 가결**

11. **소수의견 요지**: 없음

12. **기타 필요한 사항**(부대의견, 건의 사항, 촉구사항 등): 없음